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(이주희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6923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2. 20.

발 의 자 : 이주희 · 용혜인 · 손 솔
오세희 · 박정현 · 김한규
정혜경 · 양문석 · 정태호
이광희 · 문진석 · 김남근
김 윤 · 정진욱 · 전종덕
김동아 · 최민희 · 진성준
장종태 · 박지원 · 박해철
송재봉 · 민병덕 · 곽상언
임미애 · 황정아 · 박용갑
김우영 · 이정현 · 최혁진
김선민 의원(3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정 밖 청소년에게 시설 퇴소 후 주거 · 생활 · 교육 · 취업 지원, 자립 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의 자립지원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은 「아동복지법」상의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과 비교해 볼 때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자립지원에서 소외되는 가정 밖 청소년이 발생할 수 있음. 특히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정착금의 경우 현재 단 4개 지

방자치단체에서만 지급하고 있어 시설을 퇴소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 강화가 시급한 실정임.

이에 가정 밖 청소년의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후 자립지원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가정 밖 청소년이 자립의 도움을 얻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32조의3제1항).

법률 제 호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2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할 수 있다”를 “시행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적용례) 제32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가정 밖 청소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 밖 청소년이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이후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<u>할 수 있다.</u> 1. ~ 5. (생 략) ② (생 략)	제32조의3(자립지원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시행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1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(현행과 같음)